

내역서총괄표

공종	품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비고
◎	폐기물리비				4,300,000			4,300,000	
1.	건설폐토석				4,300,000			4,300,000	

내역서

공종	품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폐기물처리비					4,300,000						4,300,000	
1.	건설폐토석					4,300,000						4,300,000	
	폐기물처리비	건설폐토석	60	TON	59,352	3,561,120					59,352	3,561,120	자재단가1호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 덩프 15톤	60	TON	18,600	1,116,000					18,600	1,116,000	자재단가2호
	단수정리		1	식	-768,029	-768,029					-768,029	-768,029	
	부가가치세		10	%	3,909,091	390,909					3,909,091	390,909	

자재단가

No	품 명	규 격	단위	가격정보		물가지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거래가격		견적가1		적용단가	비 고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1	폐기물처리비	건설폐토석	Ton			59,352	하150(23.03)			59,352	부472(2	59,352	1583(23.03)			59,352	VAT별도(경
2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 덤프 15톤	Ton			18,600	하151(23.03)					18,600	1584(23.03)			18,600	VAT별도(경

정부지정지 1호

월간 물가자료



2024 No. 591

03

기획재정부 허가 전문가격조사·원가조사용역기관 발행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전문기관

대한민국물기협회

02)799-0700

www.kprc.or.kr

www.yongsungelec.co.kr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용성전기



자동제어기기 종합메이커



금탑산업훈장 수훈



용성전기주식회사
YongSung Electric Co., Ltd.

국내영업사무소 경기도 하남시 덕산로 15번길 43 (천현동) Tel.070-8823-4431 Fax.02)2249-2248
본 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백고개길 194 Tel.031)762-8920 Fax.031)762-896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2022.06.01 적용)

[자료제공 :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30km	35km	40km	50km	60km	비 고				
건설폐기물	24톤 덤프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매립지반입료,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 콘트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운반비	15,990	17,870	19,670	23,380		27,020		
			계	19,510	21,390	23,190	26,900		30,540		
	15톤 덤프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매립지반입료,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 콘트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운반비	18,600	20,930	23,330	28,150			32,800	
			계	22,120	24,450	26,850	31,670			36,320	
	4.5톤 덤프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매립지반입료,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 콘트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운반비	32,160	36,720	41,340	51,030				60,680
			계	35,680	40,240	44,860	54,550				64,200
혼합건설폐기물	24톤 암물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5,810	5,810	5,810	5,810	혼합건설폐기물 (매립지반입대상폐기물 포함)			
			운반비	56,690	60,510	64,270	72,400				79,820
			계	62,500	66,320	70,080	78,210				85,630
	16톤 암물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5,810	5,810	5,810	5,810		혼합건설폐기물 (매립지반입대상폐기물 포함)		
			운반비	68,760	73,790	80,020	90,530				102,300
			계	74,570	79,600	85,830	96,340				108,110

- 주) 1.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2021.12.1)'에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7)'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자,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2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매립지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4.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물트럭(적재용량 15.03m³), 15톤 암물트럭(적재용량 9.39m³), 4.5톤 암물트럭(적재용량 2.82m³)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물트럭(적재용량 30m³), 16톤 암물트럭(적재용량 20m³)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5.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6. 혼합건설폐기물의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m³)+반입료전액(톤)× 비중(0.63톤/m³)
7.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이하의 30km 금액을 기본으로 함.
8.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의하여 산정함.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 예시) 건설폐기물(24톤 덤프) 60km이상 km당 단가 : [27,020(60km운반비)-23,380(50km운반비)]÷10km = 364원
→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020원(60km운반비)+(364원 × 10km) = 30,660원

제조원가조사 / 공사원가조사 / 계약금액의 조정 / 학술연구용역 원가조사 / 기타 용역의 원가조사

원 가 조 사 용 역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국내 대규모 건설업체,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많은 관련업체로부터 원가조사용역 전문기관으로서 우수성과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물기협회 원가조사부 원가조사용역 문의 : Tel.(02)799-0810

■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자료제공 : 한국건설자원협회]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단위 : 원/톤)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페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콘크리트	28,516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아스팔트콘크리트	30,488

2. 재건축·재개발 공사

(단위 : 원/톤)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페콘크리트, 페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7,205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굴(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유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59,352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68,359

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단위 : 원/톤)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66,426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폐셀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폐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폐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단가 적용불가(폐셀드위치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170,497

[예설]

-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2023.6.16)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3.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폐기물처리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5 대형브레이커' 품 등을 참고하여 소환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페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2024.1.1부터 적용)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19.8.19) 중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임[관련규정 : III.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 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 2호]

물가 e-book의 기준이 됩니다.

월간 물가자료 사용해 보셨나요?

물가 e-book

- 전용 웹 사이트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 월간 물가자료와 똑같은 형태의 e-book으로 편리하게 보세요.
- 회원가입과 동일하게 e-book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해요.
- 업무를 폐지할 때 바로 검색하고 바로 출력하세요.

한국건설자원협회

자원절약 · 환경보호

한국건설자원협회

<http://www.koras.org>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일동제약B/D 3층

전화 : (02)3476-7787(代)

팩스 : (02)3476-8464

1
공
사

기획재정부등록 / 전문가격조사·원가계산용역기관 발행



綜合物價情報[®]

종합물가정보

3월

2024 통권 640호

II 생활물가·관리·사무·녹색물품·공사비·관리비



HI-3P



대한민국 내충격수도관 30년
첫발부터
(주)고리는 첨단기술과 노하우로 인류건강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충격 수도관 시장점유율 1위!
조달청 우수제품 구매실적 1위!
세계 최초 3중벽구조 내충격수도관!

www.goleepipe.co.kr
063-532-9961



대한민국물가정보

참고 1.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① 도로, 교량, 운반 및 폐기물

(사)한국건설가인협회 제공 (단위: 원/톤, 부가세 별도)

재질	종류	적용 범위	단위	처리단가
도로, 교량 운반 및 폐기물	비콘크리트	도로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비콘크리트	Ton	28,516
	페이스탈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이스탈콘크리트	Ton	30,488

② 가연물·재질별 분사

(사)한국건설가인협회 제공 (단위: 원/톤, 부가세 별도)

재질	종류	적용 범위	단위	처리단가
가연물·재질별 분사 (무연·아마모 분 말기·해체 분사)	건설폐기물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 비콘크리트, 페이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벽돌, 폐기와, 폐모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연성물질이 20% 이상 혼합된 상태	Ton	47,205
	건설모나	건설분사, 골재분사, 지반구조물분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회轉)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모나로서 함유물 85% 이상으로 구성된 것	Ton	59,352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과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혼합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Ton	68,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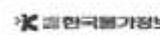
③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사)한국건설가인협회 제공 (단위: 원/톤, 부가세 별도)

재질	종류	적용 범위	단위	처리단가
가연물·재질별 분사 (무연·아마모 분 말기·해체 분사)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폐기물(폐유, 폐타입,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혼합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Ton	168,426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도록·폐관열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혼합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폐관열기(관열기)는 주로 난방용 재료 또는 폐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폐관열기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단가 적용불가(폐관열기(관열기)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Ton	170,497

해설

- 본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2023.5.16.) 「예정가격단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3.5.2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업무기준」 등 계약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함
-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비용에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도가, 노닐, 원부자재, 수직순환비, 소모품 등 기준과 2023년 건설공사 표준비용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본 처리단가에는 이음,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폐기물처리분량당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자재는 포함되지 않음)
-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멸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비용」(공정부원) 8-2-15 「대형브레이커」 등 중을 참고하여 소멸작업 별도 단가가 필요함
- 본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역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페이스탈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페이스탈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을때도 이를 「비콘크리트」 또는 「건설폐기물」 등으로 집계하여서는 안 되며, 본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장소, 지역, 발생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함(단, 단가를 제외하고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순환물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2024.1.1부터 적용)


www.kpi.or.kr

(사)한국물가정보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앞으로 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 발행

통권 638호

월간 거래가격

2024 3



대한건설협회 | www.cmpi.or.kr

• 1970년 10월 7일 등록(제라-1362호) / 2006년 7월 28일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제06-2호)
• 창간일자 1962년 11월 / 매월 1일 발행 / 통계청승인건설업임금조사기관

제품가격표 977p 참조

에스엠테크의 절전 직결 특허

쾌적한 생활·에너지절감형

급식실 절전 직결 송풍기

급식실 현대화 공사 설계반영 제품!
현재 50개 학교 설치 중!
조달 수의계약 가능 제품!



<인증서>



이지샤프트 팬



이지샤프트 클링타워



인버터



콘트롤 패널



자동제어 센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181-12

TEL: 051-894-8717~8 FAX:051-894-4859

www.smbtc.co.kr

E-mail : fan@smtech.com

■ 2024년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자료제공: 한국건설자원협회)

(단위: 원/톤)

1. 도로, 교량, 운석철거공사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운석 철거공사	패콘크리트	보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패콘크리트	28,516
	패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패아스팔트콘크리트	30,488

2. 재건축·재개발 공사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박·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패콘크리트, 패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7,205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물(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유물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59,352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68,359

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박·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지가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66,426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트류·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폐샌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폐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폐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단가 적용불가 (폐샌드위치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170,497

[해설]

- ①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53호(2023.6.16) "예산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1.5.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산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함.
-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영역의 예산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차, 노닐, 원부자재, 수리수선제, 소모품료 등이 기준과 2023년 건설공사 표준물량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물, 일면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퇴출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폐기물처리분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직운반비 및 추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m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말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물량」 [공통부문]8-2-15 대면노래미* 품 등을 참고하여 소말작업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예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패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패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정하여서는 안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운반, 지역, 발생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다만, 단가를 예외적으로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⑦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2024.1.1부터 적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자료제공: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등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30km	35km	40km	50km	60km	비 고	
건 설 폐 기 물 수 집 · 운 반 비	24분 덤프트럭	중량 기준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3,520	폐콘크리트, 패아스팔트, 콘크리트, 벽면물, 폐벽돌, 폐기와, 건설폐토석
			운반비	15,990	17,870	19,670	23,380	27,020	
		Iton	계	19,510	21,390	23,190	26,900	30,540	
	15분 덤프트럭	중량 기준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3,520	
			운반비	18,600	20,930	23,330	28,150	32,800	
		Iton	계	22,120	24,450	26,850	31,670	36,320	
	4.5분 덤프트럭	중량 기준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3,520	
			운반비	32,160	36,720	41,340	51,030	60,680	
		Iton	계	35,680	40,240	44,860	54,550	64,200	
혼 합 건 설 폐 기 물	24분 양물트럭	중량 기준	상차비	5,810	5,810	5,810	5,810	5,810	혼합건설폐기물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운반비	56,690	60,510	64,270	72,400	79,820	
		Iton	계	62,500	66,320	70,080	78,210	85,630	
	16분 양물트럭	중량 기준	상차비	5,810	5,810	5,810	5,810	5,810	
			운반비	68,760	73,790	80,020	90,530	102,300	
		Iton	계	74,570	79,600	85,830	96,340	108,110	

- 주) 1.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2021.12.17) "매립가격 하성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2022.1.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2.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차, 노면,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2년 표준용량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상기 단가는 어음,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매립지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4. 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쇼트러진 상태로서 1.6톤/m³,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m³을 기준으로 하였음.
5.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분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m³), 15분 덤프트럭(적재 용량 9.26m³), 4.5분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m³)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34분 양물트럭(적재용 용량 30m³), 16분 양물트럭(적재용 용량 23m³)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6.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7. 혼합건설폐기물의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반입료지역(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m³)×[반입료지역(톤)×비중(0.63톤/m³)]
8.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이하는 30km 금액을 기준으로 함.
9.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예시) 건설폐기물(24분 덤프) 80km이상 km당 단가 : [27,020(30km운반비)+23,380(50km운반비)]×10km+364원
 →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020원(60km운반비)+(364원×10km)=30,660원